C - 5 - 2016

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

2016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강철호

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박용규

○ 제·개정경과

- 2010년 10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2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2016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○ 관련규격 및 자료

- KOSHA GUIDE C-52-2012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○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
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 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지침에 우선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11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C - 5 - 2016

# 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당초의 계획된 공사기간 내 공사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돌관작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일기불순, 공사관련 민원, 인력·자재·장비의 품귀 등 당초의 공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목적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나, 장마·태풍·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예견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돌관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돌관작업 등"(이하 "돌관작업"이라고 한다.)이라 함은 당초에 계획된 공사기간에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인력·장비의 추가투입,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.
  - (나) "교대근무"라 함은 하나의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를 2개조 이상으로 나눠 각기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.
  - (다) "야간작업"이라 함은 주간작업에 비하여 특히 조명, 기온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작업을 말하며 통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하다.

C - 5 - 2016

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한다.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4. 건설공사 주체별 의무

### 4.1 발주자의 의무

- (1)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돌관작업을 하지 않고도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(2) 돌관작업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사품질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공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# 4.2 감독자 및 감리자의 의무

- (1) 건설업체로부터 돌관작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작업계획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일일 작업계획이 품질 및 안전·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하게 수립·이행되는지 확인한다.
- (3) 돌관작업으로 안전보건 조치가 불량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, 해당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.

#### 4.3 건설업체의 의무

- (1) 돌관공사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(가) 근로자투입 및 근무시간의 적정 배분 계획
  - (나)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안전·보건교육실시 계획
  - (다) 근로자 휴게시설 확보 계획

#### C - 5 - 2016

- (라) 관리감독자 및 안전·보건관리자의 운용계획
- (마) 작업장에 동시 투입가능 장비의 수량 및 운용계획
- (바) 가설재 및 안전시설물 확보 및 설치계획
- (사) 여러 공종의 다수 근로자 동시 투입에 따른 가설전기·가설용수 등의 확충 계획
- (아) 다수의 공종이 동일 장소에서 동시작업으로 인한 간섭의 최소화 계획
- (자) 동시작업에 의한 위험성 평가 및 대책
- (차) 작업장 내 근로자 및 장비의 동선 계획 및 정리정돈 계획
- (카) 화재·폭발예방 및 대피계획
- (타) 재해 발생 시 구조 및 응급처치 계획
- (2) 일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(가)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전 대책 수립
  - (나)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수립
- (3) 다수 공종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정회의 또는 협의체회의를 통해 작업상황과 유해·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이행하여야 하며,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#### 4.4 근로자의 의무

- (1)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2)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 조치를 따라야 한다.
- (3) 충분한 휴식과 수면, 과도한 음주 절제 등 건강관리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(4)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관리감 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.

C - 5 - 2016

### 5. 돌관작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

#### 5.1 근로자관리 계획

- (1) 근로자 동원 계획 수립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- (2) 교대근무 편성 등으로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한다.
- (가)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
- (3) 동일 장소에서 다수의 공종·공정이 동시작업을 실시할 경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잠재된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공종·공정간 간섭과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.
- (4) 위험성평가에는 동일 장소에 다수의 건설장비 운용시 충돌·협착 위험, 인화성물질·가연성가스 사용과 용접·용단 등 화기사용 작업시 화재·폭발 위험, 구조물 또는 흙막이공사시 붕괴 위험, 상· 하 동시작업에 따른 낙하 위험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(5) 근로자 추가 투입에 따른 관련 대책을 수립한다.
- (가) 현장 출입근로자의 출·퇴근 관리계획
- (나) 미숙련 근로자 및 신규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계획
- (다) 근로자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방안
- (라) 근로자 휴게시설 확보계획
- (마) 관리감독자 및 안전·보건관리자 증원 등 운영계획
- (6) 야간작업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.
- (가) 근로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 반사조끼 지급 및 착용 계획
- (나) 야간작업 시 근로자 휴식시설 설치 계획

C - 5 - 2016

### 5.2 장비관리 계획

- (1) 작업장에 동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의 적정 수량을 산출한다.
- (2) 장비 투입 전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한다.
- (3) 장비의 동선이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.
- (4) 신호수 또는 유도자 배치계획을 수립한다.
- (5) 야간작업 시 아래사항을 계획에 포함한다.
  - (가) 장비 전락 방지를 위한 가설설도로 조명 및 점멸등 설치 계획
  - (나) 안전표지판 설치위치 및 식별을 위한 조명 설치 계획
  - (다) 장비 식별을 위한 경광등 및 반사테이프를 부착 계획

### 5.3 가설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

- (1)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가설재 및 안전시설물 수급계획을 수립한다.
- (2) 빠르게 진척되는 공정에 따라 사전에 비계,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도록 계획한다.
- (3) 야간작업 시 아래사항을 포함한다.
- (가) 차량 및 장비의 충돌 등 재해방지 계획
- (나) 작업발판의 끝단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계획

### 5.4 일반 안전보건관리 계획

- (1) 일일 또는 주간단위로 단위작업 및 동시에 진행되는 타 공종의 작업의 영향을 포함 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.
- (2) 매일 작업 전 TBM(Tool Box Meeting) · 위험예지활동 및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

C - 5 - 2016

점검 등 구체적인 안전활동 실시계획을 수립한다.

- (3) 작업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안전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한다.
- (4) 현장내 각종 자재 반입 및 야적장 설치 등 정리정돈 계획을 수립한다.
- (5) 조명시설 설치
- (가) 근로자 이동통로 및 가설도로의 조명 설치 계획
- (나) 정전 발생 시 전력복구 또는 공급 계획
  - ①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
  - ② 비상발전기 수량 및 설치 계획

### 6. 돌관작업 시 현장관리

### 6.1 근로자 관리

- (1) 현장 임의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.
- (2)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별로 일일 작업시간을 기록한다.
- (3) 공종별 또는 교대 근무조 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작업복, 안전모의 색을 달리하여 착용하도록 한다.
- (4) 미숙련근로자는 단독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.
- (5) 신규채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.
- (6) 근로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게시설을 마련한다.
- (7) 야간작업 시 아래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.

C - 5 - 2016

- (가) 야간작업 개시와 종료 시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.
- (나)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근로자의 안전모, 안전화, 작업복에 부착된 반사물의 부착상태를 확인한다.
- (다) 기온이 내려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체온을 유지 될 수 있는 복장을 착용 하도록 하고,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(라) 근로자에게 소화기, 비상조명기기 및 전원스위치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.

#### 6.2 작업 관리

- (1) 동시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한다.
  - (가) 일일 공정회의를 통해 작업 장소 및 작업의 위험성 등을 공유한다.
  - (나) 자재의 낙하,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소 또는 시간적으로 작업을 적절히 분리한다.
  - (다)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장소를 철 저히 분리하여 작업한다.
  - (라) 상·하부 동시 작업으로 낙하 및 추락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배치한다.
  - (마) 작업 위치별로 작업공종과 위험요인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.
- (2)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.
- (가) 동선이 겹치는 곳에는 울타리 방호울 등을 설치하여 구분한다.
- (나) 공사차량 및 장비 등의 진출입로에는 경광 등을 설치한다
- (3)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고 그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다.
- (4) 신호의 불일치, 인식의 오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작업공종 간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.
- (5) 야간작업 시 아래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.
- (가) 야간작업 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작업반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.
- (나) 야간작업 시 작업장의 최소조도는 <표. 1>의 조도기준을 준수한다.

C - 5 - 2016

<표. 1> 야간작업 시 작업장 유형별 조도 기준

작업장의 유형	조도(Lux)
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	55 이상
일반 옥외	33 이상
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	110 이상

- (다) 개구부 주변에는 별도의 조명을 설치한다.
- (라) 가급적 단독작업은 금하고,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관리한다.
- (마) 비상전원 공급 장치, 비상 조명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

### 6.3 가설재 및 안전시설물 관리

- (1) 작업 물량의 급증으로 불량 가설재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.
  - (가)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가설재는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자재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.
  - (나)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가설재 반입 시 현장 외부로 즉시 반출한다.
- (2) 비계 조립도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도록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- (3)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확인한다.
- (4) 야간작업 시 아래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.
- (가) 차량 및 근로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반사테이프 등 식별표지를 부착한다.
- (나) 야간에 작업발판 및 구조물의 단부에 반사테이프를 부착한다.
- (다)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조명을 설치한다.

#### 6.4 건설장비 및 기계기구 관리

(1) 차량계 건설기계 관리

#### C - 5 - 2016

- (가) 사전에 인가되지 않은 장비는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.
  - ① 방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.
  - ②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무자격자의 운전을 금지한다.
- (나) 장비의 일일점검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.
- (다) 장비작업 시 또는 이동시 반드시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, 그 유도에 따라 작업한다.
- (라) 차량 및 건설장비에는 전조등 및 후진 시 경고음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마) 야간작업 시 아래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.
  - ① 장비 운전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근무시간,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에 투입한다.
  - ② 장비에는 전조등, 경광등을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.

#### (2) 전기 기계·기구의 관리

- (가) 전기 기계·기구의 현장 반입 시 안전장치 부착, 절연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점검필증을 붙여서 관리한다.
- (나) 사전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·기구의 사용을 금지한다.
- (다) 동시 작업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설전기의 용량을 증설한다.
  - ① 전기 기계·기구류의 수량 및 용량을 고려하여 가설분전함 및 전선 용량을 증설한다.
  - ② 가설분전함의 전원인출 회로에 작업공종을 알 수 있는 명패를 부착하고, 임의 조작을 금지하기 위해 가설 분전함은 잠금장치를 한다.
  - ③ 감전재해 방지를 위해 접지 및 누전차단기의 설치 상태를 일일 점검한다.
- (라) 가설분전함 주위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한다.

### 6.5 근로자의 건강관리

- (1) 돌관작업 계획에 명기된 휴게시간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.
- (2) 작업 중 수시로 휴식을 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시작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피로도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C - 5 - 2016

- (4) 혈압계, 간이혈당계 등 간이 건강검진 장비와 비상약품을 현장에 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(5) 정기적으로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건강 이상자는 위험작업에 투입을 금지한다.

### 7. 비상시 긴급 안전조치

#### 7.1 비상시 피난계획 및 훈련 실시

- (1) 화재·붕괴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여 연락체계, 대피 경로 및 유도자 배치, 대피 장소 등이 포함된 비상시 피난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(가) 비상시에 대피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한다.
  - (나) 정전시를 대비하여 비상조명등, 유도등, 손전등을 설치한다.
  - (다)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한다.
- (2) 비상시를 대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.
- (3) 응급조치시설, 구난장비 등을 비치하고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## 7.2 야간작업 시 고려할 사항

작업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야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재해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.

#### 8. 작업의 중지

- (1)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.
  - (가) 작업에 필요한 가시설 및 안전시설물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은 경우
- (나) 정전이 예고된 경우의 야간작업
- (다) 강풍, 강우, 강설, 혹한 시 옥외작업

C - 5 - 2016

- (라)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
- (마)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
- (2)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,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